###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197

발의연월일: 2024. 7. 24.

발 의 자:이수진·송옥주·김정호

황정아 • 민형배 • 이기헌

송재봉 • 신정훈 • 김종민

서미화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저임금제도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러한 최저임금제도는 특히 저임금 노 동자의 임금수준을 보호하며 사회통합적 기능을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최저임금의 적용 범위, 결정 기준 등을 정하며 가사노동자, 장애인노동자 등에 대한 적용 배제,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감액, 업종별 차등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최저임금위원회가 회의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사노동자, 장애인노동자 등에 대한 적용 배제,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감액, 업종별 차등 적용 등과 관련한 규정을 삭제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록 작성·보존의무를 신설하여 최저임금이

차별없이 적용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7조·제10조 및 제17조의2등).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선원법」의"를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선원법」의"로 한다.

이 경우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가사 사용인이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제4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3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 1.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散會)의 일시
- 2. 의사일정
- 3. 출석위원의 수 및 성명

- 4. 출석위원의 발언
- 5. 표결 수
- 6.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의 의사는 속기로 기록한다.
- ③ 그 밖에 회의록의 작성·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렁으로 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인정하면 사업의 종류별 또는"을 "인정하면"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의록의 작성·보존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	제3조(적용 범위) ①
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	
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	
다)에 적용한다. <u>다만, 동거하</u>	<u>&lt;단서 삭제&gt;</u>
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이 경우 가사(家事) 사용인에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	대하여는 가사 사용인이 가사
하지 아니한다. <후단 신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를 사
	업장으로 본다.
② 이 법은 <u>「선원법」의</u> 적용	②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
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	용하는 사업 및 「선원법」의
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	
하지 아니한다.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
분)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분) ①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	
을 고려하여 정한다. <u>이 경우</u>	<u>&lt;후단 삭제&gt;</u>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	<u>&lt;삭 제&gt;</u>
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최저	
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	

<u>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u> 제5조(최저임금액) ① (생 략)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 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 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 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 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 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 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 다.

③ (생 략)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아니한다.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 제5조(최저임금액) ① (현행과 같음)

<u><</u>삭 제>

③ (현행과 같음) <u><삭 제></u>

## 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 발생) ① (생 략)
  -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 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고용노 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제13조(위원회의 기능)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생략)
  - 2.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 별 구분에 관한 심의
  - 3. 4. (생략)

케10구 / 키 ⁊	ا ما تـ ما	ال ال	눇 귀
제10조(최저	1임금의	끄시각	요덕
발생) ①	(현행과	같음)	
2			
			<u>&lt;단서</u>
<u>삭제&gt;</u>			

- 1. (현행과 같음) <삭 제>
  - 3. 4. (현행과 같음)
- 제17조의2(위원회 회의록) ① 위 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 야 한다.
  - 1.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散 會)의 일시
  - 2. 의사일정
  - 3. 출석위원의 수 및 성명
  - 4. 출석위원의 발언

제19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u>인정하면 사업의</u> 종류별 또는 특정 사항별로 전 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 ④ (생 략)

5. 표결 수

6.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위원회의 의사는 속기로 기록한다.

③ 그 밖에 회의록의 작성·보 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 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u>인정하면</u> 특정 사 항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 다.

② ~ ④ (현행과 같음)